유럽연합(EU)의 원산지제도

蔡 炯 福
아주대학교 국제학부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제1장 원산지의 의의

상품의 원산지란 일 상품이 생산되었다고 간주되는 국가와 동 상품을 결합시키는 지리적 관련성[1] 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데, 결국 그 상품이 생산된 국가[2]를 말한다. 현실적으로 볼 때, 오늘날 세계경제는 국가간 교역이 활발해지고 상품의 생산이 다국적화함으로써 원산지를 확인할 필요성 및 중요성이 점점 더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은 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법률, 규정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적인 판정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데 이를 '원산지규정 (Rules of Origin)'이라고 한다.[3]

하지만 수입되는 개개의 상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밝히는 작업은 그리 용이하지 않다. 첫째, 오늘날 다국적 기업에 의해 생산은 세계화 및 다국적화하고 있으며, 또한 각국마다의 상이한 원산지규정을 규율ㆍ통일화시킬 수 있는 국제규범이 부재하고 있다. 둘째, 원산지규정은 기타 통상조치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즉, 원산지규정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원산지 표시요건 및 모든 차별적인 수량제한 또는 관세쿼타 등과 같은 비특혜적인 무역정책수단과 정부조달 및 무역통계에서도 사용되는 등 그 사용범위가 광범위하다.[4]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통상규범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5]

위와 같은 배경아래 각국은 나름대로의 원산지규정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EU 또한 '상품의 원산지 개념에 관한 공동정의'와 관련한 이사회규칙 802/68[6]을 제정함으로써 역외국의 대공동체로의 수입상품에 대한 원산지판정기준을 정하였다.

한편, EU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목표아래 원산지규정이 필요하였다. 즉, 첫째, EU의 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역외 제품의 반입에 대한 공동관세의

---

1) Berr, Claude J. et Tr meau, H., *Le Droit douanier : Communautaire et national*(Paris: Economica, 1990. 4e d.), p. 113.

2) 서헌제, 국제경제법-국제통상ㆍ통화규범-(율곡출판사, 1996), p. 295.

3) WTO 원산지협정 1.1.

4) WTO 원산지협정 1.2.

5) 원산지규정은 본래 공정한 무역거래에 장애를 초래하려고 마련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세계 각국이 동규칙을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로 운용함으로써 일종의 비관세장벽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이러한 부정적 효과를 시정하기 위해 우루과이 라운드협상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제4부에서 '원산지규정을 조화시키고 특히 세계무역의 수행에 있어서 확실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발효후 보다 명료하고 통일성있는 소위 '統一 原産地規則(Harmonized Rules of Origin)'을 제정하기 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였다. 따라서 이 작업계획이 개시된 후 3년이내에 이 제정작업은 완결되어야 한다. '통일 원산지규정'의 제정상황에 대해서는, 한홍렬, "원산지규정의 경제적 의의와 국제규범의 제정 현황-WTO 통일 원산지규정의 제정현황 및 전망을 중심으로-", 통상법률(법무부, 1995.10), pp. 55-78; 김규태, "통일 원산지규정 제정", WTO의 평가와 신통상이슈, 연구보고서 제381호(산업연구원, 1996), pp. 116-131.

6) R glement (CE) n 802/68 du Conseil du 27 juin 1968 *relatif la d finition commune de la notion d'origine des marchandises,* JOCE N L 148 du 28 juin 1968.

부과를 위해 역외 제품의 정확한 원산지판정이 필요했으며, 둘째, 반덤핑 제도 등 각종 무역조치의 운영상 공동체 역내산 제품과 역외산 제품의 구별 및 수출국의 식별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셋째, 각종 특혜무역협정의 운영상 원산지규정의 제정이 요구되었다고 할 수 있다.[7] 따라서 미국에 비해 EU의 원산지규정은 비교적 명료한 체계를 가지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상당히 엄격하고 사안별로 차별적으로 적용되기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8]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의 결과에 비추어, EU는 대외통상정책과 관련한 제법규들을 재정비하였으며, 상품의 원산지의 개념과 관련한 규칙 802/68를 폐지하고 '공동체 관세법'를 제정하는 1992년 10월 12일자 이사회 규칙 2913/92[9]의 제20조-제27조로 편입시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절에서는 이 신관세법에 의거하여 EU법상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개념과 그 현실적 적용 및 이행과 관련한 제반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I. 원산지와 발송지

공동관세제도가 실시될 때까지 일부 EEC 회원국들은 '원산지'(origin)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 않았으며, 단지 발송지(provenance) 개념만이 채택되고 있었다. 후자는 상품의 운송조건과 관련되어 있었는 데, 즉 발송국이란 상품을 목적(혹은 대상)국의 영역 내로 운송한 국가를 지칭하였다. 이 경우에, 운송중 발송국과 목적국과는 다른 제3국을 경유하게 됨에 따라 첫발송지와 마지막 발송지를 구별할 수 있다.

하지만 발송지 개념은 만약 이 국가들로부터 상품에 대한 제한조치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불충분하였으며 현실적으로도 이는 무역의 암거래 등의 형태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오늘날에는 발송지 개념은 원산지개념에 의해 보충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특히 통계상의 목적(운송 통계)으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원산지개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은 관세 및 통상정책을 실시하는 데 있어 필수 불가결하다. 즉, 일정한 제한조치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한 상품이 어느 국가에서 생산되었는 지의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하며, 이는 수입국내 민감한 경제분야에 대하여 주요한 효과를 미치는 통상정

---

7) 한홍렬, 원산지규정, 정책연구 92-06(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2.3), p. 59.

8) *Ibid.*

9) R glement (CEE) n 2913/92 du Conseil, du 12 octobre 1992, *tablissant le code des douanes communautaire,* JOCE N L 302 du 19 octobre 1992, p. 1.

책조치를 채택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10]

II.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결정기준이란 특정상품이 2개국이상에 걸쳐 생산되었을 경우 과연 어느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인 데, 현재로서는 이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통일된 규칙은 없다. 그러므로 국별, 상품별, 관세 혹은 비관세 목적인가의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11] 하지만 이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기준이 이용되고 있다.

첫째, 어떤 한 국가에서 완전하게 취득되고 생산된 물품에 적용되는 완전생산기준으로서, 이 경우, 완전생산국이 원산지가 된다. 이 기준은 주로 천연산품(광물, 동물, 식물, 수산물, 대륙붕자원 등)에 적용되지만 일부 공산품(섬유제품 등)에도 적용된다.

둘째, 상품이 2개국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그 상품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행위를 최종적으로 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실질적 변형기준이 이용되고 있다.[12]

한편, 특히 후자의 경우 현재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원산지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13]

(ⅰ) 세번 변경 기준(Change in Tariff Schedule) : 제품의 제조 및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원재료 또는 부품의 세번과 이로부터 생산된 제품의 세번이 상이한 경우 그러한 세번 변경이 초래된 공정이 행해진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간주한다는 기준.[14]

이 방식은 적용기준이 객관적이고 단순하며, 조건충족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용이한 동시에 HS 분류기준[15]에 의거하므로 분류의 통일성을 기할 수

---

10) G.-A. Gauthier, *Origine des marchandises,* Droit communautaire dans Encyclop die DALLOZ, pp. 1-2; *Echanges ext rieurs et Etats associ s (Section III-L'origine des marchandises),* p. 46; D. Pierru, *L'Union douani re,* dans Joly communautaire, Tome 3, p. 13.

11) 서헌제, 전게서, p. 297.

12) *Ibid.*, p. 297-298.

13) *Ibid.*, p. 298; 한홍렬, 원산지규정, 전게서, p. 13-14. 하지만 이러한 판정기준은 특정국가가 어떤 상품의 원산지로 부여받기 위해서는 그 국가에서 해당상품의 본질상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각 기준은 이러한 본질적 변화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한홍렬, 전게논문, p. 58.

14) 이 경우, 완제품의 HS 4단위 번호와 사용된 원재료나 부품의 HS 4단위 번호가 달라야 한다. 예를 들면, 양모(HS 제5001호)를 수입하여 양복지(HS 제5111호)를 생산해서 수출하는 경우, HS번호가 달라졌으므로 양복지를 생산한 국가가 원산국으로 인정되는 방식이다. 김재식, "무역상품에 대한 원산지규정의 통일협상에 관한 사례 연구"(학운 조덕구박사 화갑기념논문집, 1997. 8), p. 402.

15) 관세협력이사회(Customs Cooperation Council : CCC)는 세계무역량이 급증함에 따라 국제무역의 원활화를 도모하고자 국가 및 산업부문별로 다양하게 되어 있던 상품분류체계, 즉 SITC, CCCN(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 TSUSA(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Annotated) 등을 국제적으로 통일·적용하기 위하여 CCCN을 골격으로하여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인 HS(Harmonized System) 방식의 상품분류체계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세번 변경 기준 적용의 단점은 HS분류표는 원래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HS는 주로 가공단계를 중심으로 분류하므로 수입원재료나 부품을 단순히 축소ㆍ가공한 경우에도 새로운 HS번호가 부여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상품이 수출국에서 실질적 변형을 겪지 않은 경우에도 원산지를 인정받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이 기준을 채택한 국가들은 일반적인 원칙에서 벗어나는 특별 가공 리스트를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다.[16]

(ii) 부가가치 기준(Value Added Criteria) : 특정 공정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일정한 수준의 부가가치가 발생할 경우 해당 공정이 일어난 곳에 원산지를 부여한다는 기준.

이 방식은 원재료와 부품의 가격파악이 용이하고, 객관적이며 계량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원재료의 가격과 환율이 변동되고 있다는 점과 제품에 대한 원가계산이 용이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17]

(iii) 주요 공정 기준(Importent Operation or Process Criteria)[18] : 생산과정상 거쳐야 하는 주요 공정을 파악한 후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 변형이 일어났다고 인정할 수 있는 공정이 발생한 장소에 원산지를 부여한다는 기준.

이 방식은 기준이 객관적이며, 조건충족여부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용이하며, 환율의 변동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명세표가 길고 상세하여 작성이 곤란하며 제품의 특성상 적용이 곤란한 경우(예 : 화공품)가 있을 수 있다.[19]

하지만 위의 세 가지 기준들은 대게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예외규정들이 첨부되어 있다.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EU의 경우, 일반적으로 최종적 실질적 공정의 기준은 개개 사안별로 행해지는 기술적 검사 또는 부가가치 기준에 의하고 있으며, 충분한 변형의 기준으로서는 세번의 변경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20]

III. 적용 목적에 따른 구분

를 1983년 CCC에서 채택하여 마침내 '국제통일상품명 및 번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을 체결하였다. 이 후 세계 각국이 동협약에 가입하여 관세율표에 HS제도를 도입하여 이용하고 있다.

16) 김재식, 전게논문, p. 402.

17) *Ibid.*, p. 403.

18) 이를 기술적 기준(Technical Creteria)이라고도 한다.

19) *Ibid.*

20) 한홍렬, 『원산지규정』, 전게서, pp. 60-61.

원산지규정은 그 적용목적에 따라 특혜 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비특혜 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으로 분류할 수 있다.[21]

특혜 원산지규정은 특정국가 상호간(이를테면, EU나 NAFTA 회원국간)에 관세 및 비관세상의 특혜를 베푸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역지대 또는 관세동맹 등의 지역간 협정의 운영에 적용되는 경우와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GSP))[22] 등 특정국가군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관세특혜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비특혜 원산지규정은 위와는 달리 여타 무역정책상 상품의 원산지를 일반적으로 식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데, 이를테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원산지식별 및 동종상품이나 국내산업의 존재여부를 결정할 때도 이 규칙이 이용된다.

상품의 원산지를 규정하는 EU 관세법을 살펴보면, 총6개조문(제22-27조)가운데 5개 조문에 해당하는 제22조-제26조에서 '상품의 비특혜적 원산지'를, 그리고 제27조의 단 1개 조문에서 '상품의 특혜적 원산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법규의 구성과 아울러 원산지에 관한 그간의 EU 정책 및 관행을 살펴 보건대, EU는 전자에 근거한 상품의 원산지에 관한 공통개념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듯이 보이며, 후자에 기한 특별개념에 대해서도 명백한 구분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규칙 2913/92는 특혜 및 비특혜원산지에 관한 일반적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구체적인 적용 및 시행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적용규칙인 1993년 7월 2일자 위원회 규칙 2454/93, 즉 EU 관세법 시행규칙(R glement d'application du Code des douanes communautaire(RAC)[23]에서 규정하고 있다. RAC는 1994년 1월 1일자로 발효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비특혜 및 특혜관계에 근거한 원산지의 이와 같은 개념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제2장 비특혜관계에 근거한 공통개념

먼저, 비특혜관계에 근거한 원산지의 공통개념에 대해서 고찰한다. 이는

---

21) *Ibid*, p. 59, 한홍렬, 『NAFTA 원산지규정의 의의와 정책시사점』, 정책연구 94-02(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1), pp. 11-12; 한홍렬, 전게논문, p. 58.

22) EU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에 대한 상세한 고찰은, 졸저, EU 통상법(지산, 2001), pp. 291-311.

23) JOCE N L 253 du 11 octobre 1993.

공동관세율, 수량제한 및 상품의 수출입에 대하여 취해지는 기타 모든 조치의 통일적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이 개념은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 즉 일국가 내에서 완전하게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와 수입품에 대하여 일국가 내에서 완전하게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를 근본적으로 구별하는 토대 위에서 성립하고 있다.

I. 일국가 내에서 완전하게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

EU 신관세법 제23조에 의하면, 원산지 인정의 첫째 요건으로서 완전생산기준을 들고 있으며(제1항), 그 요건 또한 명시되어있다(제2항). 즉, 상품이 일국가 내에서 완전하게 생산된 경우에는 그 국가가 원산지가 되며, 그 상품을 내용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a) 영토 내에서 채취된 광물
b) 영토 내에서 추수된 야채류
c) 영토 내에서 사육된 동물
d) 영토 내에서 사육된 산 동물로부터 생산된 제품
e) 영토 내에서의 사냥 및 漁撈로 채집된 제품
f) 낚시 및 국적선에 의하여 채취된 제품[24]
g) 국적선상의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h) 특별한 권리의 소유시 영해이외의 해저에서 수집된 제품
i) 영토내의 폐품이나 공정에서 발생한 殘存物
j) i)로부터 생산된 물품

위 제2항의 적용을 위하여, 마찬가지로 국가의 개념은 영해를 포함한다(제3항).

위의 목록에 의하면, 지면, 지하 및 해저에서 채취된 물품의 원산지는 영해와 비교하여 볼 때 채굴물의 상태에 달려있다. 환언한다면, 이 규정은 만약 물품이 영해의 한계선에서 채취된 경우 이 물품은 영해를 영토로 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가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이러한 어려움은 제3국, 특히 EU에 의해 명시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는 데도 불구하고 각국이 주권에 의하여 영해의 한계선을 설정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 혹자에 따르면, 이러한 가정 하에서 또한 공동관세율의 적용을 위하여, 공동체적 수준에서의 결정기준을 제3국에 대하여 인정시키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

---

24) 1985년 3월 28일자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aff. 100/84, *Commission c/ Royaume - Uni,* Rec. p. 1169.

다고 주장하기도 한다.[25]

II. 수입품에 기하여 일국가내에서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

현대사회의 경제구조하에서 원산지를 달리하지 않고 제조된 상품을 상정하지 않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즉, 물품이 일국가에 의해 구입된 후 흔히 타국에서 산업공정을 거쳐 생산되곤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이 상품의 원산지는 어느 국가인가? 혹은 잠정적으로 그 물품을 수입한 국가가 원산지가 되는가? 이에 대해 EU 원산지규정은 상당한 유연성과 애매함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위원회는 다수의 부수 규칙을 제정하여 이 규정의 적용에 원활을 기하는 동시에 원산지의 합법적인 취득과 부당한 취득에 관한 해석기준을 정립하고자 노력하였다.

1. 원산지의 합법적인 취득

EU 관세법 제24조에 의하면, “2개국 혹은 다수의 국가에서 생산과정을 거친 상품은 실질적 공정(변형 또는 가공)이 최종적으로 일어난 국가가 원산지가 되며, 이러한 공정은 경제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이러한 공정을 위하여 설비가 갖추어진 기업에서 행해져야 하며, 그러한 공정의 결과 새로운 제품이 제작되거나 제작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가 이루어졌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원산지규정 802/68의 제6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던 예비부분품에 관해서는 관세법 적용규칙인 RAC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조에 의하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사전에 자유롭게 유통ㆍ수출된 설비, 기계, 기구 혹은 차량에 사용되는 필수적인 예비부분품은 위 설비, 기계, 기구 혹은 차량과 동일한 원산지로 간주된다. 이는 설비, 기계, 기구 및 일반 장비의 일부에 동시에 사용된 부품(악세사리), 예비부분품 및 공구도 위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EU 관세법 제24조에 기한 원산지의 취득은 경제적 질서에 근거하여 두 가지의 근본적 기준에 종속된다.

(1) 실질적 변형 또는 가공

---

25) Claude J. Berr et H. Tr meau, *op. cit.*, p. 119; Ph. de Guardia, *Union douani re : Origine des marchandises*, Fascicule 511, Juris-Classeurs : Europe, p. 5.

실질적인 변형 또는 가공 기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면, 유럽사법재판소는 '상품이 최초의 상품이 가지고 있지 않던 특성 및 새롭고도 특수한 성분을 취득한 경우에만 그 변형은 실질적이다.'라는 해석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여러 번에 걸쳐 변형 또는 가공의 실질적 성격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한 해석을 행하였다.

1977년 1월 26일자 "Gesellschaft f r Uberseehandel GmbH c/ Handelskammer Hamburg" 판결[26] 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규칙 802/68의 목적과 요구에 응답하기 위하여 상품의 원산지 확정은 기초상품과 변형(가공)상품간 객관적이며 실제적인 구분에 근거하고 있다"(판결이유 제5호 및 제6호)고 하였다.

또한 1984년 2월 23일자 "Zentrag c/ Hauptzollamt Bochum" 판결[27]을 들 수 있다. 구소련 및 폴란드산 카세인(casein 乾酪素) 수입회사인 독일회사는 그들의 공장에서 이 물품을 분쇄, 선별 및 포장했다. 4분의 1로 절단한 채 수입된 소고기의 뼈를 발라내는 것, 신경제거, 지방제거, 다시 자르기 및 포장은 이러한 공정이 행해진 국가에게 이 고기의 원산지를 부여한다는 점에 비추어, 유럽사법재판소는 카세인의 분쇄 및 선별, 세척과 포장공정은 실질적인 변경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이와 같은 공정은 이 상품을 소비자에게 보다 더 용이하게 판매하기 위한 것이며, 이 상품의 소유자와 성분이 변경된 것은 아니라는 게 유럽사법재판소의 입장이었다.

유럽사법재판소의 이와 같은 기본입장은 1979년 1월 31일자 "Yoshida"[28]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유럽사법재판소는 변형이 "신상품이나 원상품의 제작"에 이를 때 이 변형은 실질적이라고 간주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최종적인 실질적 변형 또는 가공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개개상품의 특수한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초상품과 변형상품간 객관적이고도 실질적인 구분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기초상품과 변형상품에 대한 최종적인 실질적 변형 또는 가공의 개념에 대하여 유럽사법재판소는 두 상품간 '객관적이고도 실질적인 구분'이 존재해야한다는 일관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 변형 또는 가공에 근거한 원산지판정기준은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적용과정에서 많은 곤란한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즉, 다수의

---

26) 유럽사법재판소, aff. 49/76, Rec. p. 41.
27) 유럽사법재판소, aff. 93/83, Rec. p. 1095.
28) 유럽사법재판소, aff. 34/78, Rec. p. 115.

공산품에 대하여 어떤 '최종적인 실질적 변형 또는 가공'이 행해졌는가를 판정하고 원산지를 정확하게 확정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기술적인 면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럽사법재판소는 이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개상품의 특수한 물리적 특성에 근거한 기초상품과 변형상품간 '객관적이고도 실질적인 구분'의 존재를 전제하여야 한다는 법해석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이해당사자에게 상품의 원산지규명에 대한 지나치게 까다롭고 기술적 분석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많은 무리가 따르는 해석태도라고 할 수 있다.

(2) '경제적으로 정당화된' 변형

실질적인 변형이 행해졌다고 해서 반드시 새로운 원산지를 획득하는 것은 아니다. 즉, 이러한 변형은 경제적으로 정당화된 것이라야 한다. 하지만 이는 명료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식적인 해석이 내려지지도 않았다. 오히려 EU의 통상정책을 왜곡시킬 수 있는 재정적, 행정적 및 정치적 고려에 의한 불법적인 무역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공동체당국의 우려가 이 조항의 삽입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만일 특정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변형이 다른 국가에서 공정의 경제적 정당화에 대한 검증없이 행해졌다면 변형을 행한 국가의 원산지는 인정될 수 없다.[29]

이에 대한 공동체당국의 우려가 보다 더 구체화된 것이 바로 EU 관세법 제25조에 규정된 '원산지의 부당한 취득'이다.

2. 비특혜원산지의 부당한 취득

(1) 부당한 취득의 금지

EU 관세법 제2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이미 행해진 변형 혹은 가공, 또는 확인된 사실에 비추어볼 때 공동체내 특정국가의 상품에 적용될 수 있는 제 규정을 우회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추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변형 혹은 가공은 어떠한 경우에든 제24조에 기하여 동 변형 또는 가공이 행해진 국가의 원산지를 취득한 상품이라고 간주될 수 없다."

이 규정은 아래에서 상세하게 검토하는 바와 같이 반덤핑조치의 우회와

---

[29]) 1989년 12월 13일자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aff. C-26/88, *Brother international c/ Hauptzollamt Giessen*, Rec. I-4253.

관련되어 있다. 즉, EU 반덤핑규칙 384/96[30]은 제14.3조에서 “EU 관세법을 설립하는 1992년 10월 12일자 이사회 규칙 2913/92에 규정된 원산지 개념의 공동정의와 관련된 특별규정들은 현(반덤핑) 규칙 혹은 그 적용규정상 채택될 수 있다.”고 정함으로써 공동체 당국은 반우회덤핑 관행상 적용되는 원산지규정을 특별히 마련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관세법 제25조에 의하면 만약 공정이 관세법 제24조에 의거하여 공동체내 적용될 수 있는 제 규정을 우회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경우 상품의 원산지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시키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이 규정은 관련국가를 발송지로 하는 수출품에 적용되는 반덤핑관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립공정이 제3국에서 행해진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관세법 제25조에 기한 우회의 개념을 이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동 규정은 만약 우회가 문제의 공정이라는 유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적용될 수 있다. 게다가 이 규정은 관세법 제24조에 의거한 일반원칙의 예외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으므로 아주 제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규정의 성격에 대하여, 1977년 1월 26일자 “Ubershchandel” 판결에서,[31] 유럽사법재판소는 분명하게 밝히기를, “규칙 (802/68) 제6조(현 관세법 제25조)는 비실질적인 변형 혹은 가공을 이용하여 둘 혹은 셋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가 (규칙 802/68의) 제1조(현 규칙 제22)의 궁극적인 목적의 실패 혹은 회원국에 의해 수입 혹은 수출에 대하여 채택된 조치를 우회하기 위한 방법으로 결정되는 것을 피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유럽사법재판소는 “Brother International GmbH c/ Hauptzollamt Giessen” 판결에서[32] 다음의 질문, 즉, “사전에 분리 제조된 부품의 조립에 관한 규칙 802/68의 제5조(현 관세법 제24조)의 범위 내에서 동 조립행위가 원산지의 구성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기존 생산설비의 사용을 포함하는 수출의 우회는 동 우회가 반덤핑관세에 적용되는 제 규정을 우회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추정을 정당화시킨다는 의미로 규칙 802/68의 제6조(현관세법 제25조)가 해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란 질문에 응답해야만 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유럽사법재판소는, 이미 존재하는 공장을 이용한 기타 국가에서 제조국에로의 구성요소의 조립의 이전은 적용되는 제규정을 우회

---

30) R glement (CE) n 384/96 du Conseil du 22 d cembre 1995 *relatif la d fense contre les importations qui font l'objet d'un dumping de la part de pays non membres de la Communaut europ enne*, JOCE N L 56 du 6.3.96, p. 1, modifi par le r glement (CE) n 2331/96 du Conseil du 2 d cembre 1996, JOCE N L 317 du 6.12.96, p. 1.

31) 유럽사법재판소, aff. 49/76, Rec. p. 41.

32) 유럽사법재판소, aff. C-26/88, Rec. 1990, p. 4253.

할 목적으로 행해졌다는 추정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단, 적절한 법규의 발효와 조립의 이전사이에는 일치점이 존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조립의 이전), 상품이 수출된 국가에서 조립공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문제의 규정에서 유래하는 결과를 피하는 것과는 달리 합리적인 동기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할 의무는 경제주체에게 있다고 해석하였다.

유럽사법재판소에 의해 확인된 이러한 해석기준에 비추어, 일례를 든다면, 말레이지아산 "칼라텔레비젼 수신기(TVC)" 사건에서, 공동체당국은 말레이지아산 및 싱가폴에서 수출된 대부분의 TVC는 이 국가들이 원산지라고 결론 내렸다. 즉, 당국에 의하면, "TVC는 제조국 혹은 조립국이 아닌 기타국가가 원산지라고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TVC는 흔히 제조국 혹은 완제품의 조립국이 아닌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구성요소 및 부품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33]

(2) 반덤핑조치의 우회 금지

상품의 원산지규정 범위내 우회덤핑방지조치와 관련하여, EU 반덤핑규칙 384/96은 "공동체 관세법을 설립하는 1992년 10월 12일자 EEC 이사회 규칙 2913/92에 규정된 특히 원산지 개념의 공동정의와 관련된 특별규정들은 현(반덤핑)규칙 혹은 그 적용규정상 채택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34] 따라서 공동체당국은 우회덤핑 방지조치의 절차상 특별히 적용되는 원산지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없으며, 반덤핑 규칙의 제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다.[35]

(가) EU에 있어서 우회덤핑에 관한 규제조치의 연혁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이 진행 중이던 1987년 6월, EU는 반덤핑조치의 우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소위 "스크루 드라이버 규정(dispositions tournevis)"[36]이라 불리는 우회덤핑방지규칙 1761/87을 채택하였다.[37] 만일 일 상품이 EU 역외국가로부터 부품의 형태로 수입되어 EU 역내에서는 단지

---

33) JOCE N L 255 du 1.10.94, p. 54.

34) EU 반덤핑규칙 384/96 제14.3조.

35) EU 우회덤핑에 관한 상세한 분석은, 졸저, EU 반덤핑법(지산, 2000), pp. 119-143.

36) R glement (CEE) N 1761/87 du Conseil du 22 juin 1987 modifiant le r glement (CEE) n 2176/84 relatif la d fense contre les importations qui font l'objet d'un dumping ou de subventions de la part de pays non membres de la Communaut conomique europ enne, JOCE N L 167 du 26.6.87, p. 9.

37) Cf. Article premier du r glement CEE 1761/87 du Conseil du 22 juin 1987, JOCE N L 167 du 26.6.87, p. 9.

조립 · 생산과정만 거친 후 자유유통되는 경우, 이 상품은 EU산으로 간주되었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규제할만한 실질적인 법규가 부재하였던 것이다. 동 규칙에 의하면, 다음의 세 가지 요건, 즉,

- 조립 및 생산이 관련성이 있거나 연합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행해지거나,
- 조립 또는 생산이 덤핑조사의 개시이후에 착수되거나 상당량 증가되었으며,
- 반덤핑관세의 대상이 된 제품의 수출국을 원산지국으로 하는 사용부품이나 재료의 가치가 기타 모든 사용부품 또는 재료의 가치를 적어도 50% 상회한 경우에는 반덤핑관세를 회피했다고 간주되었다.[38]

그 후, 이 스크루 드라이버규정들은 규칙 2423/88의 제13.10조에서 재도입되었으나,[39] 일본정부에 의해 동규정의 GATT협정 위반을 이유로 제소되었다. 패널은 동규정들이 GATT협정 제3조를 위반한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이를 수용한 EU는 1990년부터 우루과이 라운드가 종결될 때까지 동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40]

(나) EU의 우회덤핑방지에 관한 新規定 : 규칙 384/96 제13조

구규칙 2423/88과는 달리 EU의 현반덤핑규칙 384/96은 우회덤핑에 관한 두 가지의 상이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41] 즉, 첫째, 고전적 혹은 조립형 우회덤핑의 개념에 근거한 것으로서, 향후 우회덤핑방지조치는 공동체 혹은 제3국[42] 영역내 조립공정의 경우뿐만 아니라 "발효중인 조치가 우회되었을 때" 제3국을 발송지로 하는 동종상품의 수입에도 적용될 수 있다.[43] 둘째, 위의 개념으로도 규제할 수 없는 우회덤핑행위에 대한 개념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따라서 단 하나의 가정에 근거하고 있던 구규칙 2423/88의 제13.10조에 비하여 현규칙은 다양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우회의 개념을

---

38)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강순권, "EC 반덤핑법에 있어서의 신과세회피방지규칙", EC의 통상관계법, 법제자료 제152집(법제처, 1989), pp. 161-175.

39) 파리조약(석탄철강공동체를 설립하는 조약)의 상품들은 본질적으로 일차변형을 하는 기초상품들(produits de base)로 간주되었으므로 이 규정은 결정 2423/88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40) 제9차 반덤핑 및 보조금 활동에 관한 연례보고서의 위원회에 의한 설명을 참고할 것. SEC (91) 974 final, p. 23-24.

41) EC 규칙 384/96의 제13조에 기한 반우회덤핑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Holmes, Simon, *Anti-Circumvention under the European Union's New Anti-Dumping Rules,* Journal of World Trade, 29(3), June 1995, pp. 161-180; Vander Schueren, Paulette, *New Anti-Dumping Rules and Practice: Wide Discretion Held on a Tight Leash?,* Common Market Law Review, Vol. 33, n 2, April 1996, pp. 271-297; Komuro, Norio, *U.S. Anti-Circumvention Measures and GATT Rules,* Journal of World Trade, 28(3), June 1994, pp. 5-49.

42) EU 반덤핑규칙 384/96 제13.2조.

43) EU 반덤핑규칙 384/96 제13.1조.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44] 또한 이와는 별도로 그 절차면에서 수입의 등록의무 및 반우회증명서의 제시의무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우회덤핑조항과는 별도로 관세규정은 계속 적용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고 있는 등 기존의 관련규정에 비하여 불명확한 제요소에 대한 실정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심사체계를 한층 강화하였다.

1) 고전적 또는 조립형 우회덤핑의 규제

공동체 혹은 제3국에서 조립 공정이 발효중인 조치의 우회에 기여했다고 간주되는 경우, 공동체는 우회덤핑방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45] 구 규정과는 달리,[46] 조립공정과 관련한 신우회덤핑규정은 향후 공동체내 기업보다는 제3국에 설립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보다 더 적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조립공정에 대하여 확정 우회덤핑방지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제 조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우회덤핑방지조치는 “공정이 반덤핑조사가 개시된 후 또는 직전에 시작되었거나 현저히 증가하였으며, 관련 부품이 조치의 적용을 받는 국가로부터 유입되었을 때” 부과될 수 있다.[47]

이 조건은 구 반덤핑규칙 2423/88의 제13.10조와 아주 유사하다.[48] 하지만 이 새로운 규정은 반덤핑조사의 개시 ‘직전(juste avant)’ 및 ‘현저한 증가(sensiblement intensifi e)’의 개념에 대한 어떠한 해석이나 기준도 정하고 있지 않다. 특히 후자의 경우, 1980년대 말 구규정에 의해 조사의 대상이 된 대부분의 공장들은 신설된 공장이었거나 덤핑국(주로 일본) 생산자가 새로이 취득한 공장이었으므로 ‘공정의 현저한 증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현행 규정에 새로이 도입된 이 판단기준에 대하여 공동체당국은 개개 사안별 심사를 통하여 명백한 해석기준을 제시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49]

---

44) GATT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나타난 이 규정의 적용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수의 필자에 의해 지적되었다. Rapport du panel du GATT *relatif la r glementation communautaire sur les importations de pi ces d tach es et de composants,* adopt le 6 mai 1990, IBDD, 1989-1990, suppl ment n 37, p. 132; Flory, Th., *La r glementation communautaire "tournevis", le probl me de l'anticontournement et le droit du GATT,* Droit et Pratique du Commerce International, 1991, tome 17, n 2, p. 198.

45) EU 반덤핑규칙 384/96 제13.2조.

46) 규칙 2423/88 제13.10조 a)를 참고할 것. : " 확정반덤핑관세는 공동체내에서 조립 혹은 생산된 후 공동체시장에 재수입된 상품에 대하여 ... 부과될 수 있다.“

47) EU 반덤핑규칙 384/96 제13.2조 a).

48) 규칙 2423/88 제13.10조 a) 제2문을 참고할 것. : “조립 혹은 생산이 반덤핑조사의 개시후에 시작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증가해야 한다.”

49) 김영무ㆍ조대연, 전게논문, p. 94; 이태열, "유럽연합의 반덤핑관세회피행위에 대한 규제에 관한 고찰", 경제정책

둘째, 부품이 “조립생산품에 사용된 부품 총가치의 60% 혹은 그 이상”을 구성하여야 한다.[50]

즉, 부품의 60%가 동종의 완제품을 덤핑한 국가로부터 조달하여야 한다. 단, 이 조건은 ‘조립생산품의 부품의 총가치가 60% 혹은 그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완제품의 가치를 고려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반면, 40%의 부품이 반드시 EU를 원산지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51] EU 혹은 제3국에서 조달된 것이면 족하다.

구 규칙 2423/88의 제13.10조의 실제 적용시, 부품의 총가치의 60% 이상과 관련한 기준에 대하여 공동체는 일반적으로 당해 부품이 공동체의 공장에 인도될 때의 기업에 의한 구매가격에 근거한 부품 혹은 재료의 가격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규칙 384/96은 단지 부품의 가격만을 언급할 뿐, 재료의 가격은 제외시키고 있다. 이 점에서 공동체당국은 광범위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현실적으로, 원료가 공동체내로 수입되었거나 부품의 형태로 변형되었을 때, 공동체내에서 지불하는 생산비용을 포함하는 이 부품의 가격은 60% 기준에 해당하는 부품의 가격뿐만 아니라 수입된 원료의 가격에도 포함되어있는 것이다.

셋째, 부품이 조립생산품에 사용된 부품 총가치의 60% 이상을 구성하고 있을지라도, 단, 조립 혹은 생산 중 반입된 부품에 부가된 가치가 “생산가의 25%을 초과”하는 때는 예외로 한다.[52]

60% 기준과는 달리, 25% 기준은 ‘조립공정 혹은 완성공정 중’에 부가된 가치만을 평가하는 것이며, 만약 부가된 가치가 ‘총생산비용’의 25% 미만이라면, 우회덤핑방지조치는 부과될 수 없다. 이 경우, 생산비용은 정상가격의 산정시 이용되는 생산원가와 같은 것으로 이해된다. 즉, 재료비, 직접인건비 및 일반산업비용은 포함하나, 일반 판매비, 행정비 및 기타비용 등 일반관리비(selling, general and administrative(SGA) costs)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25% 검사기준은 원산지 결정시 사용되는 부가가치검사와 다음의 두 가지 면에서 차이점이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즉, 첫째, 원산지 결정기준은 일반적으로 ‘조립 및 완성공정’중에 발생한 부가가치만이 아니라 현지에서 조달한 부품의 가치도 아울러 감안하며, 둘째, 원산지 판정의 경우, 부가가치를 제조원가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관리비

연구 제2호(상명대학교 경제정책연구소, 1996), p. 59.

50) EU 반덤핑규칙 384/96 제13.2조 b).

51) 이에 대하여 “중국산 자전거 일부부품” 사건(JOCE N L 16 du 18.1.97, p. 57)을 참고할 것. 이 사건에 대한 개요는, 안완기, 전게논문(하), pp. 78-80.

52) EU 반덤핑규칙 384/96 제13.2조 b).

(SGA) 및 이윤을 포함하는 완제품의 공장도가격과 비교한다는 점이다.[53]

마지막으로, 조립공정은 "관세의 구제 효과(les effets correcteurs du droit)가 유사상품의 가격이나 수량 면에서 약화되었다는 증거가 있는 한편, 동종상품에 관해 이미 확립된 정상가격과 관련하여 덤핑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을 때에는" 우회에 기여했다고 간주된다.[54]

이 세 번째 조건은 이미 부과된 반덤핑조치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다시 말하여, 만약 우회한 공장에서 조립된 동종상품의 가격 및/혹은 수량이 이미 부과된 반덤핑조치의 구제효과를 약화시키지 않는다면, 새로운 우회덤핑방지조치를 채택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미 산정된 정상가격과 관련한 덤핑의 존재에 관하여, 먼저, 공동체당국은 동종상품의 정상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심사절차를 반복하는 대신에 덤핑을 행하는 제3국내 완제품에 대한 조사의 결과 도출된 정상가격을 이용할 것이다. 다음은, 만약 조립된 상품이 우회되었다고 간주된다면, 공동체당국은 이 정상가격과 우회한 공장에서 조립된 상품의 가격을 비교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절차과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공동체당국은 이에 대한 적절한 해석 및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55]

2) 기타 유형의 우회덤핑

조립공정의 경우와는 별도로, 반덤핑규칙 384/96의 제13.1조는 다음과 같이 또 다른 유형의 우회덤핑을 인정하고 있다. 즉,

(ⅰ)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것 이외에는 달리 충분한 원인이나 경제적 정당성을 찾을 수 없는 관행, 공정 또는 가공에서 비롯된 공동체와 제3국간 거래형태의 변경

(ⅱ) 반덤핑 관세의 구제 효과가 유사상품의 가격이나 수량면에서 약화되었다는 증거가 있는 한편, 동종상품에 관해 이미 확립된 정상가격과 관련하여 덤핑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에도 우회덤핑이 행해졌다고 인정되므로 위원회는 사실상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다.

특히 후자의 유형, 즉 반덤핑관세의 구제효과의 약화는, 위에서 고찰한

---

53) 김영무ㆍ조대연, 전게논문, p. 96; 이태열, 전게논문, p. 62.

54) EU 반덤핑규칙 384/96 제13.2조 c).

55) 이에 대하여, Holmes, Simon, *Anti-Circumvention under the European Union,s New Anti-Dumping Rules,* Journal of World Trade, 29(3), June 1995, p. 171.

바와 같이, 조립공정의 경우에 적용되는 우회덤핑 조사의 개시조건에도 도입되어있다.

또한 전자의 경우에도 그 적용영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애매모호하다. 이를테면, 거래형태의 변경의 경우, 이에는 원산지의 허위신고, 部品 一襲(kits)을 수입하는 행위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으로 세번이 분류되지 않도록 제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된다.[56] 이 조항을 통하여, 공동체당국은 앞으로 어떠한 형태의 우회덤핑행위에도 대처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체법적 근거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재량권 남용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다수의 국가들은 기타 유형의 우회덤핑의 도입을 반대하였으나 결국 반덤핑관세 부과의 조건으로 공동체의 이익에 관한 개념의 해석을 보다 유연성 있게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타협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거래형태의 변경의 예를 통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규정은 주로 반덤핑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3국을 통해 완제품이 EU에 수입되는 경우에 주로 이용될 것으로 전망되며,[57] 제3국 또는 EU에서의 조립생산의 경우에는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일반적 조건이 적용된다.

3) 절차

만일 위에서 살펴본 제 조건에 비추어보아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자문위원회와의 협의 후, 우회덤핑여부에 관한 조사가 개시된다. 이 절차는 위원회에 의해 수행되며, 위원회는 9개월이내 동 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확정조치의 필요성이 정당화된 연후에, 위원회의 제안에 의거한 단순 과반수의 의결로 이사회는 확정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58]

반덤핑규칙 384/96은 우회덤핑의 절차과정에 중요한 두 가지 새로운 절차를 도입하였는 데, 바로 수입등록의무와 반우회증명서이다.

(ⅰ) 수입의 의무적 등록

---

56) 위원회는 1994년에 발행한 설명각서에서 말하기를, 우회는 “(반덤핑)관세의 우회을 행하려는 수입국 혹은 제3국에서 조립공정상 다양한 형태로, 이를테면, 원산지의 허위신고, 조립을 위한 一襲(Kits) 및 약간의 변형을 한 상품형태로의 수입 등”으로 행해질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위원회는 “수년전부터 이를테면, 주로 사진기, 자전거 혹은 콤택트 디스크 등의 상품이 우회형태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급한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M morandum explicatif, COM (94) 414 final, p. 173.

57) 김영무ㆍ조대연, 전게논문, p. 98.

58) EU 반덤핑규칙 384/96 제13.3조.

이 등록제도는 반덤핑규칙 384/96에서 우회덤핑 절차에 처음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향후 수입상품은 세관당국에 반드시 등록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세관당국에게 수입의 의무적 등록을 필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데,[59] 우회덤핑방지조치는 등록된 날부터 부과될 수 있다.[60] 이 의무등록제도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수입상품의 우회가능성여부에 대하여 미리 판단할 수 있게 하므로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려는 취지하에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61]

(ii) 反迂廻證明書

또 다른 새로운 제도는 반우회덤핑증명서 발급이다. 수입업자들은 상품의 수입이 우회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증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것을 세관당국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62] 이 증명서제도는 공동체의 반덤핑절차상 전적으로 새로운 것으로서, 위원회의 '입법참고자료'(M morandum explicatif)에 의하면, 이 제도는 관세의 부품에의 적용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우회덤핑을 할 목적으로 사용된 부품과 그렇지 않은 부품를 구별할 목적으로 신설하였다고 한다.[63]

따라서 규칙 384/96의 제13.4조에 비추어 볼 때, 수출업자들이 반우회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 관련상품은 조치의 적용을 면제받게 될 것이다. 이 증명서의 발급은 위원회와 이사회의 사전허가를 필요로 하며, 이 허가는 사실조사가 완전히 행해진 후에야 행해지게 된다.

이에 대하여 반덤핑관세의 확장과 관련한 중국산 "자전거 일부 부품의 수입면제의 허가" 사건을 들 수 있다. 위원회에 따르면, 면제제도는 자전거의 핵심부품의 수입에 대하여 확장된 관세의 조건부 혹은 확정적 면제의 세 가지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다. 즉, 자전거의 핵심부품의 직접수입은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 한하여 확장된 권리가 면제된다.

(i) 동부품이 위원회에 의해 면제된 조립업자에 의해 혹은 그의 이름으로 자유유통된다고 선언된 때

(ii) 동부품이 개별적인 목적지의 통제하에 놓이거나 종국적으로 면제된 조립업자에게 인도된 때, 혹은 동부품이 자유유통된다고 선언되거나 제한된 수량으로 일당사자에게 인도된 때,

---

59) EU 반덤핑규칙 384/96 제13.3.
60) EU 반덤핑규칙 384/96 제14.5.
61) 김영무ㆍ조대연, 전게논문, p. 99.
62) EU 반덤핑규칙 384/96 제13.4조.
63) M morandum explicatif, COM (94) 414 final을 참고할 것.

(iii) 동부품이 위원회에 의해 면제의 대상이 되는 조립업자에 의해 혹은 그의 이름으로 자유유통된다고 선언된 때.[64] 따라서 자전차 핵심부품의 수입이 면제된 조립업자 혹은 '최소성(혹은 미소) *de minimis*' 조항에 비추어 보아 확대된 권리가 면제되었을 때, 위원회는 "일부가 면제된 부품의 조립공정에 있어 유효하게 이용되었다." 혹은 "최소성 기준이 준수되었다."고 보증하게 되는 것이다.[65]

III. 특정상품에 대한 특별 원산지규정

RAC 제35조-제40조는 비특혜원산지규정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데, 두 가지 범주의 상품에 대한 적용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즉, 첫 번째 범주는 공동체 복합품목표(la nomenclature combin e(불); the Combined Nomenclature(영))[66] 제XI부의 섬유 및 편물제품을 포함하며(제36조-제38조), 두 번째 범주는 규칙 802/68 제14조에 의거하여 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특별규칙들을 포함한다(제39조).

1. 복합품목표 제XI부의 섬유 및 편물제품

RAC 제36조에 의하면, 신관세법 제24조에 비추어 볼 때, 섬유 및 편물제품에 대해 원산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변형이 필요하다. RAC 제37조는 선택적인 방법으로 상품의 실질적 변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데, 원칙적으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일정한 예외가 인정된다.

(1) 세번변경기준

RAC 제36조는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기준과 비교해볼 때, 이 기준은 수출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64) JOCE N L 17 du 21.1.97, p. 17.

65) *ibid.*, p. 18.

66) 과거에는 관세율표와 무역통계품목표(NIMEX)가 별도가 공표되었으나 1987년 7월 23일 EEC 이사회규칙 제2658/87에 의하여 양자가 통일되게 되어 공표되기 때문에 '복합'이라는 수식어를 쓰게 되었다. 복합품목표는 8자리의 분류체제로 되어 있다. 6자리까지는 HS에 의거한 국제분류이며, 7, 8자리는 독자적인 세부분류이다. 박귀훈,

(2) 특별변형기준

하지만 상기 세번변경기준은 다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즉, RAC 부록 10에 열거된 다음과 같은 품목들이 그 적용대상이다: 모직물 및 모직 부산물, 면직물, 합성 혹은 인공섬유, 면사, 직물, 솜, 실(絲) 및 고무줄, 끈, 양탄자, 특수직물, 냅킨, 리놀늄, 섬유관 및 양장품.

위와 같은 제품에 대해서는 그 변형이 '실질적인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공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정이 행해졌을 때, 세번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특별변형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여러 유형으로 나뉘어진다.

(a) 최소부가가치기준

특정제품의 경우, 어떤 특수한 변형은 완제품의 부가가치의 변경을 가져온다. 그 증감율은 제품에 따라 다양하지만 다음에 제품의 경우, 일정수준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되면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모직물, 면직물 및 자수품 50%, 염색사 52%, 손수건과 유사 자수제품 및 이불과 유사 자수제품 60%, 직물 75%.

(b) 지리적 단일성기준

어떤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 및 당해국이 원산국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그 공정이 '一國內'에서 전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복합품목표 제61장-제62장의 의류에 대하여, 예를 들어, 일국내에서의 옷의 실질적 가공은 당해국의 원산지를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하지만 이를 공동체의 지리적 단일성 원칙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주의를 요한다. 즉, 만일 양복의 가공이 공동체의 2개 회원국에서 나누어 행해졌다할지라도 이는 공동체가 원산지가 된다. 반면, 그 가공이 일 회원국-일 역외국에서 나누어 행해진 경우에는 공동체는 원산지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c) 양자택일기준

"EC종합관세법 해설<III>, 관세, 1995.2, p. 81.

RAC 부록 10은 일부 상품에 대한 원산지결정시 양자택일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즉, 생산자는 주요공정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이를테면, 자수이불에 대해 부록 10은 생산자로 하여금 일국내에서의 완전가공 혹은 부가가치 60% 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특정한 경우에는 두 가지 주요공정기준 중에서 선택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捺染옷감에 대해 그 옷감이 염색의 준비 혹은 마무리공정을 어느 국가에서 거쳤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원산지를 결정할 수도 있다.

(d) 불충분공정

다음과 같은 특정공정은 상품의 원산지를 인정하는 데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된다(RAC 제38조).

a) 운송 및 저장을 하는 동안 상품의 상태를 보존할 목적으로 행해진 조작(환기, 도색, 건조, 손상된 부분의 적출 및 유사공정)
b) 먼지제거, 체로 거르기, 선별, 분류, 조합(세트별 혼합 포함), 세탁, 절단과 같은 단순공정
c) ⅰ) 포장의 교체, 분할 및 재분류
   ⅱ) 작은 널빤지로 간단한 주머니와 상자를 만들거나 또는 기타 단순한 포장공정
d) 상품 혹은 상자 위에 표시, 꼬리표 혹은 기타 표식을 하는 행위
e) 완전한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 제품의 부분들의 단순 재조합
f) 상기 a)-e)항에 언급된 둘 혹은 셋 이상의 공정의 병합

2. RAC 부록 11의 제품

구 원산지규정 802/68은 위원회가 특정상품에 대한 특별 원산지규정을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었다(제14조). 그리하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13개 품목에 대한 특별규정을 채택하였는 데, RAC는 부록 11에서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⑴ 재료, 기계, 도구 혹은 자동차에 필요한 교환부품의 원산지에 관한 1970년 1월 9일자 EEC 규칙 37/70[67]
⑵ 라디오 및 TV 수신기의 원산지에 관한 1970년 12월 23일자 EEC

[67]) JOCE 1970, L 7/6.

규칙 2632/70[68]

⑶ 베르뭇(vermouth)酒의 원산지에 관한 1971년 2월 12일자 EEC 규칙 315/71[69]

⑷ 녹음기의 원산지에 관한 1971년 4월 27일자 EEC 규칙 861/71[70]

⑸ 집적회로의 원산지에 관한 1989년 2월 3일자 EEC 규칙 288/89[71]

⑹ 광학시스템복사기의 원산지에 관한 1989년 7월 11일자 EEC 규칙 2071/89[72]

⑺ 포도주스의 원산지에 관한 1990년 10월 5일자 EEC 규칙 2884/90[73]

⑻ 계란을 원료로 한 특정상품의 원산지에 관한 1990년 10월 5일 EEC 규칙 2884/90[74]

⑼ 특정 세라믹제품의 원산지에 관한 1990년 12월 11일자 EEC 규칙 3561/90[75]

⑽ 특정 가금류의 생고기 및 허드레고기의 원산지와 관련한 1990년 12월 14일자 EEC 규칙 3620/90[76]

⑾ 볼베어링의 원산지에 관한 1990년 12월 18일자 EEC 규칙 3672/90[77]

⑿ 섬유류의 원산지에 관한 1991년 5월 24일자 EEC 규칙 1364/91[78]

⒀ 섬유가 포함된 가죽옷, 신발 및 팔뚝시계의 면직물과 모직물의 원산지에 관한 1991년 5월 24일자 EEC 규칙 1365/91[79]

⑿번과 ⒀번은 다음과 같은 기존의 3개의 규칙, 즉 ⅰ) 특정 섬유제품의 원산지에 관한 1971년 5월 24일자 EEC 규칙 1039/71,[80] ⅱ) 특정 양품, 의복 및 신발의 원산지에 관한 1977년 6월 24일자 EEC 규칙 1480/77[81] 및 ⅲ) 특정 섬유제품의 원산지에 관한 1978년 4월 10일자 EEC 규칙

---

68) JOCE 1970, L279/35.
69) JOCE 1971, L36/10.
70) JOCE 1971, L95/11.
71) JOCE 1989, L33/23.
72) JOCE 1989, L196/24.
73) JOCE 1990, L276/13. 1973년 7월 25일자 EEC 규칙 2026/73을 대체함(JOCE 1973, L206/33).
74) JOCE 1990, L276/14. 1969년 4월 3일자 EEC 규칙 641/69를 대체함(JOCE 1969, L83/15).
75) JOCE 1990, L347/10. 1973년 7월 25일자 EEC 규칙 2025/73을 대체함(JOCE 1973, L206/32).
76) JOCE 1990, L351/25. 1971년 5월 10일자 EEC 규칙 964/71을 대체함(JOCE 1971, L104/12).
77) JOCE 1990, L356/30. 1978년 7월 27일자 EEC 규칙 1836/78을 대체함(JOCE 1978, L210/49).
78) JOCE 1991, L130/18.
79) JOCE 1991, L130/28.
80) JOCE 1971, L113/13.
81) JOCE 1977, L164/16.

749/78[82]을 대체하였다.

이 특별규정들의 적용을 받는 상품의 원산지 판정을 위해서는 상기 전통적인 세 가지 기준, 즉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및 주요공정기준이 활용된다.

첫째, RAC 부록 11은 일부 세라믹제품 및 베르뭇주에 대해 세번변경기준은 적용하고 있다. 위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이 기준은 적용의 단순화 및 용이성, 그리고 객관성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기준 적용시 사용되는 HS분류표는 원래 원산지 판정을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므로 실질적 변형을 겪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둘째, RAC 부록 11은 부가가치기준을 최소부가가치기준과 최대부가가치기준 등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적용하고 있다. 전자는 녹음기와 라디오ㆍTV 수신기에 적용되는 데, 이 제품들의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제품들의 가격이 최소 45%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여야 한다. 후자는 일 제품에 포함될 수 있는 비원산지의 원료의 양을 제한한다. 이를테면, 양모의 원산지를 판정함에 있어 최대 50%의 비원산지의 원료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며, 섬유로 만든 시계팔찌의 경우 최대 40%의 원료의 사용이 가능하다.

셋째, RAC 부록 11은 상기 기준과 아울러 다수의 제품에 대해서는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기준은 제품의 원산지 부여가 가능한 공정을 제시하고 있는 포지티브기준(Positive Standard)과 원산지 판정을 받을 수 없는 공정을 명시하고 있는 네거티브기준(Negative Standard)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져 적용된다.

전자의 경우, 두 가지 예를 들 수 있다. 육고기는 당해 가축이 2-3개월 동안 사육된 후 도축된 국가를 원산지로 간주하며, 반도체집적회로는 조립보다는 확산(diffusion)공정이 행해진 국가가 원산지가 된다.

후자의 기준은 제품의 제작 과정상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공정을 비교한 후 특정 공정의 상대적 비중을 문제삼으로써 원산지를 부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네거티브기준은 그 속성상 상당한 불명료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일련의 공정들이 단순히 실질적 공정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했을 뿐 실질적 공정의 정의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건 중 어느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인 지 아니면 일부를 충족하더라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지에 관한 설명이 없다. 따라서 어떠한 공정을 추가하거나 부품의 사용구성을 바꿈으로서 원산

82) JOCE 1978, L101/7.

지 부여가 가능한 지 여부에 관한 예측이 사실상 명확하지 않는 것이다.[83] RAC 부록 11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품목에 대해 네거티브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ⅰ) 포도쥬스의 경우, 포도즙의 가공만으로는 원산품의 성질을 부여하기에는 불충분하며, ⅱ) 포도즙 혹은 알콜을 첨가한 포도주 및 베르뭇주를 제조하기 위한 포도주의 경우, 생포도주의 가공만으로는 원산지를 부여하기에는 불충분하다. ⅲ) 광학시스템복사기의 원산지 판정의 경우, 케이블, 실린더, 롤러, 베어링, 볼트와 너트 등의 가공을 수반한 복사기의 조립만으로는 그 공정이 행해진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하기에는 불충분하다.[84]

Ⅳ. 원산지 증명서

수입되는 상품이 특정국가를 원산지로 하고 있다는 증명은 "공동체 내부의 상거래를 직·간접적으로 혹은 현실적 및 잠재적으로 교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85] 요구된다.

EU 관세법 제26조에 따르면, 관세법 혹은 기타 EU의 특별법규는 상품의 원산지가 서류의 제출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할 수 있다(제1항). 특히 수입특혜를 받고 있는 특정 섬유제품 및 농산물의 수입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원산지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RAC 제47조-제6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47조에 의하면, 원산지 증명서는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a) 이 증명서는 交付國에 의해 필요한 보증을 할 수 있으며 엄격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당국이나 기관에 의해 발부되어야 한다.

(b) 수량, 성질, 상표 및 일련번호, 상품의 용적 및 총 혹은 순수중량 등 상품을 식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적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만일 상품이 운송도중 민감하게 변화하거나 혹은 그 중량이 확정될 수 없거나 그 식별이 일반적으로 기타의 사항, 즉 발송인의 이름에 의해 보증되는 때에는 수량이나 용적 등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

(c) 위의 사항에 부합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특정국이 원산지라는 것을 증명한다.

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는 상품의 출발지인 국가의 상업회의소에서 발

---

83) 한홍렬, 원산지규정, 전게서, pp. 69.

84) Cf. 1983년 3월 23일자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Proc dure p nale c/ Paul Cousin,* aff. 162/82, Rec. 1983, p. 1101.

85) 1974년 7월 11일자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aff. 8/74, *Dassoville*, Rec. p. 837.

부하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향후 외국소재 외교대표부, 세관당국 및 특정한 관련 정부 부서 등도 유관 당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86]

위와 같은 '보편적 원산지증명서'와는 별도로, 농산물 수입[87] 및 일반특혜관세제도와 관련한 특별규정들이 있다. 이에 대한 서류들의 제출 및 인정조건들은 RAC에 비교적 상세히 규정되어있다.

한편, 한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비록 이 증명서에 의해 원산지가 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만일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증명서가 발부되었을 지라도 관세당국은 필요한 모든 보충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관세법 제26조 제2항). 또한 공동체당국도 의견청취를 하거나 및 서류의 진위 혹은 자료의 정확성 여부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통제할 수 있다.[88]

원산지의 허위신고에 대하여 공동체당국은 처벌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사례로 “Donckerwolcke”와 “Rivoira”를 들 수 있다.

(ⅰ) “Donckerwolcke” 사건[89] : 한 벨기에회사는 리비아와 시리아를 발송지로 하는 합성섬유와 포장용 가방을 프랑스로 수입하였는 데, 이 수입은 벨기에-룩셈부르크연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이라고 신고되었다. 합성섬유는 벨기에 세관의 관할에 귀속되었으며 자유롭게 유통되었다. 그러나 프랑스 세관당국은 이 수입은 진정한 원산지신고(리비아)를 하지 않았으며, 프랑스 관세법에 의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입허가절차를 교묘히 회피했다고 간주하였다. 이리하여 프랑스 세관당국은 수입자에 대해 원산지를 허위 신고했다는 이유로 기소하였다. Douai 항소법원은 룩셈부르크법원이 유럽사법재판소에 대해 로마조약(EEC조약) 제177조에 기한 선결적 판단에 대한 답변을 받을 때까지 판결을 연기하였는 데, 그 선결적 판단을 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자유유통체제하의 상품에 대하여 수입회원국(프랑스)에 의해 세관에 신고된 서류에 원산지국을 명시할 필요성은 수량제한과 동등한 조치를 구성하는 것은 아닌가?”

이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는 “회원국들은 상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 이외의 다른 것을 수입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게다가, 수입자에 의해 상품의 최초의 원산지를 신고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 위반이 오로지 행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한 제제의

---

86) Berr et Tr meau *op. cit.*, p. 127.

87) Cf. RAC 제55조.

88) RAC 제64조 및 제95.

89) 1976년 12월 15일자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aff. 41/76, *Suzanne Donckerwolcke, pouse Criel et Henri Schou c/ Procureur de la R publique a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e Lille et Directeur G n ral des Douanes et Droits indirects,* Rec. 1976, p. 1921.

적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ii) **“Rivoira” 사건**[90] : 1970년 12월과 1971년 12월에 L once Cayrol은 디저트용 포도를 프랑스로 수입했으며, Maison Rivoira에 의해 이탈리아로 발송 후 자유 유통시켰다. 이 포도는 이탈리아 수출상표를 부착하고 있었으며 이탈리아를 원산지로 한다는 표식과 이 상품이 품질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Instituto Nazionale per il Commercio Estero(ICE)의 증명서가 첨부되어있었다.

프랑스세관의 심사결과, 원산지의 허위신고 및 가짜 혹은 부정확한 서류에 기하여 Cayrol과 Rivoira는 금지된 상품을 수입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Montpellier 고등법원에 의해 유죄가 인정되었다.

L once Cayrol은 ICE 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세관당국에 과태료를 납부해야할 책임이 있는 것은 Rivoira라고 주장하면서 Saluzza법원에 Rivoira의 자산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요구하였다. Rivoira는 이 절차에 대하여 항변하였다.

Saluzza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에게 “자유 유통되는 상품의 수입이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혹은 문제의 상품의 원산지의 표시를 허용하는 기타 양식에 따라야 한다는 사실은 로마조약 제30조에 의해 금지된 수량제한과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조치를 구성하는 것은 아닌가? 또한 위원회가 로마조약 제115조 범위내의 허가를 주기 전에 만약 회원국들이 기타 회원국들을 발송지로 하는 모든 상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함으로써 이 금지조항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Rivoira사측은, 첫째, 자유 유통되는 상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의무와 관련하여, 공동통상정책(Common Commercial Policy: CCP)[91]하에서 공동체세관증명서(DDI 혹은 T2)는 회원국간 상품의 상호수입활동을 실행하는 데 충분하다. 둘째, 세관당국은 기타 표시와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이러한 표시는 기타의 이유로, 이를테면 품질기준과 관련한 규칙에 기하여 요구될 수 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상품의 원산지 신고의 결여 혹은 침해적 성격은 세관행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공동통상정책의 미완성을 이유로, 회원국에 의해 적용되는 통상정책조치

---

90) 1977년 11월 30일자 사법재핀소 판결, aff. 52/77, *Leonce Cayrol c/ Giobanni Rivoira et Figli,* Rec. 1977, p. 2261.

91) 공동통상정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졸저, EU통상법(지산, 2001), pp. 11-45; EU 통상연구회, EU의 통상정책과 법(율곡출판사, 2000), pp. 19-49.

간 부조화가 존재하는 경우 및 밀수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이 증폭되는 경우에는 회원국들은 제3국을 발송지로 하여 자유 유통되거나 수입된 상품의 원산지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미 Donckerwolcke 판결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공동체내에서 자유유통되는 상품이라 할지라도 회원국들은 수입자에게 문제의 상품의 최초원산지에 대한 신고를 요청하는 것은 금지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조건 하에서, 이 원산지에 대한 파악은 관련당사국에게는 로마조약상 인정되는 통상조치의 범위를 한정하는 데 필요하며, 또한 위원회에게는 동조약 제115조에 기한 통제권과 결정권의 실행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위의 두 사례의 분석에 미루어볼 때, 회원국들은 이미 공동체시장 내에서 자유 유통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기타의 조치도 설정할 수 없다. 단, 제한적인 경우, 즉 밀수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약상 인정된 범위내의 통상정책조치를 실시할 수 있을 따름이다. 한편, 원산지의 허위신고와 관련해 볼 때, 이는 공동체 시장내의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교란할 우려가 있으므로 회원국들은 수입자들에게 상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신중하게 고려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유럽사법재판소가 판단한 것과 같이 구태여 비례(proportionality)의 원칙을 개입시키지 않더라도 마치 '금지된 상품'과 같이 원산지의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의해 인정된 제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본다.[92]

제3장 특혜관계에 근거한 특별개념

특혜 원산지규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EU가 특정한 제3국 혹은 제3국의 단체와 체결한 조약에서 상품의 원산지 취득에 관한 조건을 규정할 수 있는 데, 이러한 규칙의 내용은 개개 관련조약에 따른다. 두 번째 유형은 특정국, 특정국의 단체 혹은 지역(개발도상국, 구 유고슬라비아, 팔레스타인점령지구 등)을 위하여 EU에 의해 일방적으로 부여되는 특혜관세조치의 수혜를 받는 상품에 적용되는 규칙인 데, RAC의 제66조-제14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사회 결정 91/482/EEC[93]에 근거하여 해외국가 및 영토(pays et territoires d'outre-mer : PTOM)에 특별히 적용되는 원산지규정은

---

92) Charles de Guadia, *L'origine des marchandises en 1991 selon le droit communautaire,* Gazette du palais (doctrine) du 25 juin 1991(1er sem.), pp. 310-311.

93) JOCE N L 263 du 19 septembre 1991.

ACP국가군(Etats d'Afrique, des Caraibes et du Pacifiques 아프리카, 카리브 및 태평양연안국가군)에 대한 로메협약[94]의 기본규칙들을 원용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1992년 12월 7일자 이사회 규칙 3576/92[95]는 EU와 제3국간 특혜관계에 의한 특정 광물, 화학제품 및 부대산업에 적용되는 특별규칙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조약 및 특별규칙들이 있지만, 아래에서 고찰하는 바와 같이 상품의 원산지는 기본규칙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한편, EU와 특혜관계에 있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이 EU의 특별대우를 받는 다른 국가에 수입되었을 때, 이 경우에 적용되는 원산지규정은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는 데, 이것이 바로 기본규칙의 토대를 상당히 복잡하게 만든 '원산지의 누적적용'에 관한 문제이다.

I. 기본규칙

(i) 모든 특혜체제에 대한 공통규칙 : EU와 관련국간 개개 조약 혹은 특혜관계 설립에 관한 일방적 결정은 EU와 이들 국가간 교역시 원산지를 정의하는 특별규칙을 정하고 있다. 이 규칙은 모든 상품에 공히 적용되나 단, 각 산유국별로 개별적인 규칙을 적용하는 석유제품은 예외로 한다.

EU 혹은 관련국에서 '완전하게 생산된 상품'에 대한 정의는 위에서 고찰한 비특혜관계에 근거한 공통개념에 따른다. 하지만 수입품에 기하여 취득한 상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충분한 변형'의 개념이 이용된다. 즉, 제조과정에서 당해 상품에 부여된 HS에 의한 稅番의 첫 네자리수가 변경된 때에는 충분한 변형이 일어난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특혜관계에 근거한 원산지의 특별개념의 혜택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상품이 원산지국을 떠나 EU까지 곧바로 운송되어야 한다.[96] 이 직접운송조건은 특혜체제의 비수혜국들이 거래에 개입하거나 동체제의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관련상품을 대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목적아래 마련되었다.

(ii) 특정 조약에 대한 특별규칙 : 상이한 조약에 대한 특별규칙은 개개 조약에 부속되어있는 '원산지'에 관한 의정서의 형태로 규정되어있는 데, 이

---

94) 지난 1975년부터 2000년말까지 EU-ACP 국가간의 무역 및 협력관계를 규율해왔던 로메협약(Lom Convention)은 2000년 6월 23일자로 베닌(Benin)의 코토누에서 체결된 코토누협정(Cotonou Agreement)에 의해 대체되었다. 이 협정은 향후 20년간 적용되게 된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http://europa.eu.int/comm/development/cotonou/index_fr.htm(검색일자: 2001. 7. 5)

95) JOCE N L 364 du 12 d cembre 1992, p. 1.

96) RAC 제75조.

들은 개개의 경우 지나치게 다양하고 특정화되어 있으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개 조약의 본문 내에 독립된 항목을 두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위원회는 특혜무역에 적용되는 원산지규정을 통일하기 위한 다수의 제안을 이사회에 제출하였으며, 1994년 12월에 Essen에서 개최된 유럽이사회에서도 논의되었다. 또한 현재 적용되고 있는 대다수의 규칙들을 개정하고 있으므로 머지않아 특혜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EU차원의 통일된 원산지규정이 제정되리라 생각된다.

<표1> EU 특혜원산지규정의 적용

구 분	대 상 국
특정국 혹은 특정지역과 체결한 조약에 의거한 특혜관계	- 스위스 - EEA(EU 15개국+노르웨이, 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 - 노르웨이, 아이슬랜드(EEA 조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품) -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 루마니아,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 에스토니아, 레토니아, 리투아니아(발트국) - 마로크, 알제리아, 튀니지(마그렙국) - 이스라엘 - 사이프러스, 말트, 요르단,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 페오에(F r)군도, Ceuta, Melilla - 마케도니아 - ACP국가(Cotounou협정 회원국) -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 멕시코
관세양허에 의거한 특혜관계	-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수혜국 -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일부 포도주 품목)
기타 복합적인 특혜관계	- 안도라(일부 공산품과 농산품) - 터어키(① 암스테르담조약 부록 I(관세동맹) 이외의 ECSC(석탄철강공동체) 및 농산품을 제외한 공산품 ② 암스테르담조약 부록 I(특혜관세)의 농산품 ③ ECSC 상품(1996년에 체결된 ESCS/터어키 자유무역협정) ④ 1999년 1월 1일자로 터어키산 공산품의 범유럽적 누적 적용의 대상이 됨

II. 원산지의 누적적용

원산지의 累積適用이란 '특정제품의 생산이 같은 특혜 대상국들을 거쳐 생산될 때 이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를 인정해 주는 방법'이다. 만일 누적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최종 생산과정이 발생한 국가에서의 부가가치만이 적용될 것이며 누적이 인정될 경우에는 생산과정을 거친 여러 국가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모두 한 국가에서 발생한 것처럼 간주될 것이다.[97]

이와 같은 원산지의 누적적용은 위의 기본규칙, 특히 원산지라고 간주된 국가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변형을 요구하는 특정한 기본규칙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즉, 원산지의 누적적용은 특정상품이 원산지의 변경기준에 이르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한 누적적용으로 인하여 규칙의 요구수준을 상회함으로써, 다수의 국가에서 불충분한 취급을 받게 만든다. 이리하여 상품의 원산지는 이를 최종적으로 취득한 국가가 된다. 하지만 이러한 완화는 관련된 공정의 성격에 따라 분별력있게 인정되어야 하며,[98] 이와 같은 이유로 원산지의 누적적용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ⅰ) 양자간 누적적용 : 기본규칙에 의해 요구되는 변형과 같은 정도의 중요한 변형이 부재하는 경우에 수입상품으로 하여금 수입국의 원산지 취득을 허용하는 EU와 공여상대국간 교역에 한정되는 누적적용. 단, 일반특혜관세제도의 수혜국과 EU간 교역은 이 양자간 누적적용에서 제외된다.

(ⅱ) 부분적 다자간 누적적용 : EU가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수입된 상품이 만약 이 국가들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과 함께 통용되고 있다면, 이 국가군을 구성하는 어떤 국가에서나 원산지를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는 누적적용. 이에 대한 예로는 EU와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 국가들과의 관계를 들 수 있는 데, 이를 특히 지역적 누적적용이라 한다.

(ⅲ) 종합적 다자간 누적적용 : 특혜대우를 받는 지역의 전회원국이 원산지의 취득면에서 볼 때 단일 영토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누적적용. 이 누적적용의 예로는 EU와 ACP국가군, 연합 해외국가 및 영토(pays et territoires d'outre-mer associ s : PTOMA) 및 마그렙과의 관계를 들 수 있다.[99]

---

97) 한홍렬, 원산지규정, 전게서, p. 84.
98) Berr et Tr meau, *op. cit.*, p. 125.
99) *Ibid.*

Ⅲ. 특혜원산지의 부당한 취득

특혜원산지제도를 이용한 원산지의 부당취득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테면, 1989-1995년 6년간 총 766건의 불법사례가 적발되었다.[100] 이 가운데 322건이 1995년 한해동안 행해졌는 데, 94건이 섬유제품의 유통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에 공동체당국은 섬유제품의 원산지의 부당한 취득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1. 섬유제품의 원산지의 부당취득에 대한 조치

전통적으로 섬유제품분야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었으므로 공동체는 '다자간섬유협정(MFA)'의 범위 내에서 다수의 협정을 체결하고 있었다. 이러한 협정에 의해 공동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이 기타 원산지체제를 통하여 공동체 영역내로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유통의 우회를 탐지하기 위한 다수의 제도를 마련하였다.

EEC 규칙 616/78은 이와 같은 문제점의 해결을 겨냥한 것이다.[101] 이후, 1998년 EC 규칙 1541/98은 섬유체제의 공정한 적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의 유통의 우회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102] 동 규칙은 복합품목표 제4부의 섬유제품 가운데 초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제2조)를, 또한 기타 품목에 있어서는 송장에 기재된 내용의 신고가 행해진 경우에 한하여 공동체내에서의 자유로운 유통을 인정하고 있다. 관세특혜를 받기 위하여 EUR 1, EUR 2 증명서의 제시 혹은 송장에 제시된 내용의 신고는 이와 같은 증명이 행해진 곳에서 수락된다. 만일 여전히 부당취득의 우려가 남아있는 경우, 위원회는 보충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동 규칙은 어떤 종류의 제재조치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MFA의 이행차원에서 공동체는 다수의 국가들과 섬유제품의 교역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는 데, EEC 규칙 3030/93[103]은 이 협정들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동 규칙 제15조에 의하면, 위원회는 상품의 유통이 우회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국가에게 할당된 쿼타를 조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현재 'TAFI(Textile Anit-Fraud Initaitive)'가 공동체 영역으로 수입된 섬유제품의 원산지에 관한 감시를 담당하고 있다.

---

100) COM(97) 402, annexe 2.
101) JOCE 1978, L 84/1.
102) JOCE 1998, L 202/11.

2. 기타 제품의 원산지의 부당취득에 대한 조치

1997년, 위원회는 이스라엘산 오렌지쥬스의 수입에 대하여 EUR 1 증명서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어가는 시점이었으므로 동 상품의 수입자들에게 그 내용을 알리는 통보를 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는 EU-이스라엘간 체결된 자유무역지대협정의 범위 내에서 수입된 오렌지쥬스가 이스라엘산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였던 것이다.[104]

3. 공동체 수입자의 책임성

공동체 수입자는 자신이 수입한 상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규칙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는 자신이 수입하여 공동체 영역 내에서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는 상품이 적정한 절차를 거쳐 원산지를 취득했는 지의 여부에 대해 확인할 책임이 있다. 만일 당해 상품의 원산지가 부당하게 취득되었다고 판명되면, 원산지의 부당한 신고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를 부담하여야 한다.[105] 이에 대해, 수입자는 그에 대한 책임이 '권한있는 당국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책될 수 있을 뿐이다.[106]

제4장 원산지규정의 이행절차

Ⅰ. 일반적 이행절차

원산지규정의 실시는 '관세법위원회(Comit du code des douanes)' 및 'EU 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의해 행해진다. 따라서 구 규칙 802/68에 의해 운영되고 있던 '원산지위원회(Committee on Origin; Comit de l'origine)'는 관세법위원회에 의해 폐지되었다.

관세법위원회는 각 회원국 대표와 위원회의 대표로 구성되며, 위원회 대표가 의장이 된다. 동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즉,

---

103) JOCE 1993, L 275/1.
104) JOCE 1997, C338/13.
105) 1984년 11월 13일자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Van Gend en Loos NV,* aff. jointes 98 et 230/83, Rec. 1984, p. 3763.
106) 1996년 5월 14일자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aff. jointes C-153/94 et C-204/94, *Fero Sea-food,* Rec. 1996, p. I-2465.

동 위원회는 회원국에 의해 제기된 관세규칙과 관련된 모든 질문에 대해 심사하며, 또한 위원회에 의해 마련된 제 조치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위원회에 의해 제안된 조치는 이단계의 절차를 거쳐 채택된다. 일단계에서 관세법위원회는 가중다수결로 제안된 조치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다. 만일 관세법위원회가 이 제안을 거부하거나 혹은 가중다수결로 의결하지 못한 경우, 이 안은 각료이사회에 회부된다. 각료이사회는 이 안에 대해 3개월 이내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만일 각료이사회가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제출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RAC 제247조-제249조).

Ⅱ.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EU 관세법은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두지 않고 일반적 절차를 준용하고 있다. 또한 위반에 대한 벌금에 대해서도 상품의 관세율에 의거하여 부과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산지 표시 위반 혹은 허위 신고에 대한 벌금은 회원국의 관할 관세청에서 부과하게 된다. 이에 대해 프랑스 관세법(le code des douanes national) 제412조를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

동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원산지 표시 위반 혹은 허위 신고의 경우에 당해 상품의 몰수하고 1,000-10,000 프랑의 벌금의 부과할 수 있다.

- 모든 밀수품 및 신고없이 행해진 모든 수출입품
- 관세 혹은 기타 과징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해진 수출입품의 가격 혹은 원산지에 대한 허위 신고
- 발송인과 수신인을 표시함에 있어 행해진 모든 허위 신고
- 관세납부의무의 면제에 관한 공동체법규에 의해 규정된 제조항의 수혜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행해진 모든 허위 신고
- 상품의 우회
- 여러 개의 덩어리 혹은 밀봉ㆍ연결된 수하물을 신고하면서 낱개로 제출하는 것
- 제259조에 규정된 경우 외 외국선박에 의해 프랑스항구에서 다른 프랑스항구로의 상품의 운송
- 문서 누락 혹은 문서 원본의 미제출, 문서에 기재된 상품의 누락 및 문서에 기재된 혹은 신고된 상품의 성질의 차이
- 비관세지역에의 거주, 소매판매 혹은 비인가된 취급 금지 위반

Ⅲ. 사법심사절차

원산지규정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사법심사는 주로 취소소송과 선결적 부탁절차를 중심으로 행해진다.

1. 취소소송

취소소송(EC조약 제230조)이란 공동체행위에 의해 자신의 이익이 영향을 받은 자가 당해 행위를 상대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와 같은 취소소송의 일차적 목적은 개인의 권리보호 보다는 공동체기관의 법적 행위에 대한 합법성 통제에 있다. 즉, 취소소송이란 여러 범주의 공동체주체들에게 하자있는 공동체행위의 위법성을 확인케하여 위법한 행위를 배제케 함으로써 공동체행위의 합법성을 회복시킬 가능성을 열어주는 데 있는 것이다.[107]

취소소송은 회원국 또는 공동체당국(이사회와 위원회) 및 人(自然人과 法人)이 제기할 수 있다.

우선, 전자의 경우, 소송은 당해 행위의 공표 또는 원고에 대한 통고가 있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대한 절차적 요건의 위반, EC조약과 관련 법규의 위반 및/혹은 권한의 남용 등 특정한 취소이유를 그 근거로 하여 제기되어야 한다. 하지만 회원국 또는 공동체당국에 의해 원산지규정에 대해 취소소송이 제기된 예는 없다.

다음, 회원국 및 공동체당국과는 달리 人의 경우 소송제기권은 상당히 제한된다. EC조약 제230조 제4문은 “자연인 또는 법인은 동일한 조건 하에서 자기를 대상으로 하는 ... 혹은 타인을 대상으로 할지라도 자기와 직접적 및 개별적으로 관계되는 결정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자연인과 법인도 원산지규정이 ‘자기를 대상으로 하여’ 혹은 ‘자기와 직접적 및 개별적으로 관계되는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취소소송보다는 주로 선결적 부탁절차를 이용하고 있다.

2. 선결적 부탁

선결적 부탁(preliminary reference)이란 회원국의 국내법원이 국내법과 공동체법 사이에 상이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럽사법재판소에 관련 공

---

107) 김대순, EU법론(삼영사, 1995), p. 495-496.

동체법의 해석에 대한 판단을 부탁하는 제도이다(EC조약 제234조). 선결적 부탁의 대상은 ① 공동체설립조약의 경우, 그 해석, ② 공동체기관의 행위의 경우, 해석 및 그 유효성 ③ 이사회에 의해 설립된 부속기구의 規程(statute)의 해석도 부탁의 대상이 된다(제234조 제1문).

선결적 부탁절차를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人(이하 개인)이 EU 원산지규정에 기하여 채택된 회원국의 조치, 이를테면,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관세의 부과 혹은 역내원산지증명서 발행의 거부 등에 불복하여 국내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산지규정의 효력 및 해석 문제를 제기한다. 회원국의 국내조치가 합법적인가의 여부는 동 조치가 근거를 두고 있는 EU 원산지 기본규정 및 기타 관련 위원회 규칙의 효력 및 해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내재판소가 EU 원산지규정의 효력 및 해석문제를 유럽사법재판소에 부탁하면 동 재판소는 위원회에 의하여 채택된 관련 규칙이 EU 원산지 기본규정 및 공동체법의 일반원칙 등에 반함으로써 위법은 아닌가, 혹은 EU 원산지 기본규정을 여하히 해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선결적 판단을 내리게 된다. 국내재판소는 유럽사법재판소의 선결적 판단에 의거하여 회원국 조치의 합법성 유무를 최종적으로 판정하게 되는 것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선결적 부탁절차에 기하여 위원회가 채택한 규칙의 위법성을 인정했으며, 또한 상기 “Zentrag c/ Hauptzollamt Bochum" 사건 판결에서는 EU 원산지 기본규정에 대한 사법심사를 행하기도 하였다.

제6장 EU 원산지규정의 시사점 및 전망

Ⅰ. EU 원산지규정의 우리 나라 원산지제도에 대한 시사점

1. 원산지판정기준의 시사점

EU는 실질적 변형 기준 가운데 원칙적으로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준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2개국 혹은 다수의 국가에서 생산과정을 거친 상품의 경우, (ⅰ) 실질적 공정(변형 또는 가공)이 최종적으로 일어난 국가가 원산지가 된다. 하지만 실질적 변형이 최종적으로 행해진 국가를 원산지로 확정하는 것은 현실적ㆍ기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유럽사법재판소는 이에 더하여 ‘개개상품의 물리적 특성에 근거한 기초상품과 변형상품간 객관적이고도 실질적인 구분의 존재’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

고 있다. (ii) 이러한 공정이 경제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하고, (iii) 그 결과 새로운 제품이 생산되거나 혹은 그 제작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가 이루어졌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경제적 정당화 여부에 대한 해석기준은 상당히 자의적일 수 있으며, 또한 명료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공동체당국의 재량권의 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기초상품과 변형상품간 객관적이고도 실질적인 구분의 존재 근거로 '상품의 물리적 특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테면, 부품을 수입하여 단순히 조립공정만을 거친 경우 혹은 수입원재료를 축소·가공한 경우에는 상품의 물리적 특성의 실질적 변경이 행해졌다고 볼 수 없는 문제점 등이 있으므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EU와 거의 동일한 기준을 채택·적용하고 있다. 즉, 관세법 제229조 제1항 제2호는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 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가공 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한 나라"를 원산지로 간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실질적 변형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며, 대외무역법 제55조 제1항 제2호에서도 동일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외무역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수출입품목의 생산 제조 가공과정에서 2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라 할지라도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수입원재료 혹은 부품의 단순한 가공·조립의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관세법 시행규칙 제74조는 보다 상세하게 원산지 판정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2단은 "...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 가공 도는 제조(이하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는 당해 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6단위 품목번호와 다른 6단위 품목번호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로 한다"고 하면서 세번변경기준에 의거하고 있다. 하지만 "... 6단위 품목번호만으로 ...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는 충분한 정도로 실질적인 생산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품목에 대하여는 주요공정 부가가치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원산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보충적 기준으로써 주요공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EU와는 달리 우리 나라의 원산지 관련 법률은 실질적 변형을 초래한 공정의 '경제적 정당화'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그 동안 우리 나라의 대외무역정책은 수출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며, 또한 수입품의 생산 및 공정이 과연 정당한 경제적 과정과 상황 하에서 행해졌는가의 유무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점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중국 및 동남아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일부 상품의 경우, 경제적 정당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생

산되거나 혹은 원산지를 부당하게 취득하는 사례가 점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 정당화에 대한 규정의 도입은 우리 나라의 대외통상정책의 근본적인 기조 위에서 그 실효성 유무가 논의되어야 하며, 또한 원산지의 부당한 취득은 특히 반덤핑조치의 우회와 관련하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법제의 단일화 필요

공동체 관세법인 1992년 10월 12일자 이사회 규칙 2913/92가 제정되기 이전에는 EU의 원산지제도는 1968년 6월 27일자 이사회 규칙 802/68에 의해 규율되고 있었다. 하지만 대외통상정책에 관한 정책 및 법규들을 재정비하면서 원산지는 상기 공동체 관세법에 편입되어 제20조-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EU의 경우, 관세동맹이 결성된 이래 공동통상정책의 범주 내에서 독립된 법체계 하에서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및 그 관련 법률 속에 원산지규정이 혼재함으로써 동 규정의 현실적 적용 및 운용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특히 원산지 결정기준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는 주로 '특혜 원산지규정'을 두고, 대외무역법에서는 주로 '비특혜 원산지규정'에 대해 규율하는 이원적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원적 체제 및 유사 규정들의 중복으로 인하여 원산지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그 실효성의 확보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원산지정책의 일관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원산지와 관련한 법률과 규정의 통일일 단일화가 시급하며, 대외정책에 관한 일반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대외무역법 보다는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 관세법에서 원산지에 관한 독립된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표2> 우리 나라 원산지 관련 규정 현황

주요관련법규	관련조항	비고
관세법	제229조	원산지 확인기준
	제230조	원산지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제231조	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
	제232조	원산지증명서
관세법시행령	제236조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관세법시행규칙	제74조	원산지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제75조	특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제76조	직접운송원칙
	제77조	원산지의 사전확인요령
관세청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제1조-제4조	원산지 관련사항의 집행에 있서 잎료한 세부사항
관세청 '원산지표시방식 및 위반물품처리에 관한 지침'	제1조-제14조	원산지표시방식의 운영 및 위반물품처리의 적정성 확보
대외무역법	제23조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의 표시
	제24조	원산지판정
	제25조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제39조	불공정한 수출입행위의 금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2조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지정
	제53조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
	제54조	원산지표시방법의 확인
	제54조의 2	원산지표시위반물품에 대한 시정조치
	제54조의 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54조의 4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제55조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
	제56조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사전판정
	제57조	이의제기
	제58조	원산지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9조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제60조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	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

3. 원산지 담당 부서의 단일화 및 체계화 필요

상기 원산지규정과 관련한 법제의 단일화와 관련하여 담당부서의 단일화 및 체계화가 필요하다.

EU에 있어서 대외통상정책은 주로 위원회에 의해 수행되지만, 원산지와 관련한 제반 정책 및 실무는 관세법위원회가 담당한다. 원산지규정의 해석

및 적용은 상당히 기술적인 면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실무담당자에 의해 검토·집행되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EU의 경우, 원산지정책에 대한 각 회원국간의 입장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세법위원회는 각 회원국 대표와 위원회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산지에 관한 법규의 단일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으므로 관련 법률에 의한 수입물품의 원산지 결정에 관한 담당 기관은 서로 상이하다. 즉, 비특혜 원산지규정에 의거한 원산지표시를 위한 원산지결정은 산업자원부장관, 특혜원산지규정에 의한 관세특혜대상 여부 결정은 관세청장, 그리고 남북 교역과 관련한 원산지 결정은 통일부장관이 주된 기관이 된다.

원산지의 판단과 그 결정은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한 관세특혜의 부여뿐만 아니라 반덤핑·상계관세나 세이프가드조치의 부과 등 산업 및 무역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행해지고 있는 원산지결정 및 그 현실적 적용 및 이행은 주무 기관 혹은 단일 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산지제도는 원산지규정의 사실상 집행기관인 관세청(장)에 의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오늘날 더욱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는 원산지 위반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여러 주요 통상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원활하게 하는 게 기여할 것이다.

Ⅱ. EU 원산지규정의 전망

WTO 원산지협정은 원산지규정의 통상정책적 적용의 금지, 통상규제적 적용의 금지, 통일적 · 합리적 적용의 원칙, 자의적 적용의 금지, 무차별적용의 원칙 및 소급적용의 금지 등의 제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향후 제정될 'WTO 통일원산지규정'은 실질적 변형기준으로 특정상품 또는 상품군의 원산지를 판정할 때 세번변경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면 동기준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관세코드를 최소한으로 변경하여 적용하는 방향으로 마련될 것이다.[108]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로서는 교역 및 대외투자활동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다자간 국제통상규범인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이 마련된다는 것은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현 WTO 원산지협정의 규율대상은 원칙적으로 비특혜적인 관계

에 한하며, 특혜적인 통상협정을 위한 원산지규정에 대해서는 단지 동협정 제2부속서에서 공동선언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그 법적 성격에는 다소 의문이 있다. 물론 비특혜 원산지규정에 적용되는 제원칙을 특혜 원산지규정에도 준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겠지만 법적 구속력과 실효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협정 본문 내에서 규정되어야 하리라 본다.

이 점에서, 특혜·비특혜 원산지규정이 향후 EU 역외기업들에 대하여 미칠 영향력은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즉, 현실적으로 비특혜관계 원산지규정은 종래부터 절차·내용·적용 면에서 역외기업에게 적지 않은 불이익을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만일 'WTO 통일원산지규정'[109]이 제정된다면, EU의 원산지규정의 역외기업에 대한 영향력은 상당한 정도로 감소할 것이다. 하지만 비특혜 원산지규정의 경우, WTO 원산지규정의 조화의 영역 외에 방치되어 있으므로 앞으로도 여전히 대외정책적 견지에서 적용될 것이며, 강력한 대외영향력을 행사할 것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EU 원산지규정의 미래 과제는 비특혜규칙의 조화와 규율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수립하고 그 적정한 보장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도 볼 수 있다.

---

108) WTO 원산지협정 9.2 (ii).
109) Voy. Supra note n 5.